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 본문 중 “1년에 한하여 200만원”을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폐업하거나”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그 훈련비용의 지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훈련 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 라.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1년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자. 수탁기관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1호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2호	계약해지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p>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p>1)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p> <p>2)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p> <p>가)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 선발한 경우</p> <p>나)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p> <p>3)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p>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p> <p>나)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p> <p>다)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우</p> <p>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p> <p>4)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p> <p>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p>법 제16조 제2항제3호</p>	<p>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p> <p>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시정요구</p> <p>시정요구</p> <p>시정요구</p>
<p>라.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16조 제2항제4호</p>	<p>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마.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p>	<p>법 제16조 제2항제5호</p>	<p>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나.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 라.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 자.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19조제2항 제2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p>다.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5) 2천만원 이상인 경우</li> </ol>	<p>법 제19조제2항 제3호</p>	<p>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p>
<p>라.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5) 2천만원 이상인 경우</li> </ol>	<p>법 제19조제2항 제4호</p>	<p>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 · 인정제한</p>
<p>마.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ol>	<p>법 제19조제2항 제5호</p>	<p>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p>

<p>3)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17조 및 제18에 따라 지원 또는 용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p> <p>4)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p> <p>5)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p>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p> <p>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 시정명령</p>
<p>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19조제2항 제6호</p>	<p>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p>
<p>사.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p>	<p>법 제19조제2항 제7호</p>	<p>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 · 인정제한</p>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라.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마.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다.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3호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p>라.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li> <li>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li> <li>5) 2천만원 이상인 경우</li> </ol>	<p>법 제24조제2항 제4호</p>	<p>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인정제한</p>
<p>마.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li>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li> <li>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li> </ol>	<p>법 제24조제2항 제5호</p>	<p>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시정명령</p>
<p>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24조제2항 제6호</p>	<p>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p>사.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p>	<p>법 제24조제2항 제7호</p>	<p>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종전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하던 것을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으로 하여 지원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의 발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법령을 위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 등에 대한 위탁·인정제한의 범위를 해당 과정에서 해당 직종으로 변경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의 반납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제3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44조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검사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